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28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김위상·박정하·김선교
신성범·정동만·고동진
김도읍·이인선·김상훈
박충권·김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
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
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감축목표 국회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 ----- ----- -----.